

보도시점 2026. 8. 27.(목) 17:00 배포 2026. 8. 27.(목) 16:00

## 「개인투자용 국채」 9월 2,300억원 발행 예정

- ① 2026년 9월부터 처음으로 일반국민들이 퇴직연금계좌(DC형, IRP형)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에 직접 투자 가능
- ② 3년물(이표) 20억원, 3년물(복리) 30억원, 5년물 500억원, 10년물 1,100억원, 20년물 650억원 발행

재정경제부는 2026년 9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총 2,300억원 발행할 예정이다. 이번달부터 도입 예정인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수요를 고려하여 전월대비 발행량을 800억원 확대하였다. 종목별로는 3년물 이표채 20억원, 3년물 복리채 30억원을 발행하고, 5년물은 500억원, 10년물은 1,100억원, 20년물은 65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표면금리는 8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3년물 3.780%, 5년물 4.085%, 10년물 4.415%, 20년물 4.570%)를 적용한다. 가산금리는 5년물 0.1%, 10년물 0.35%, 20년물 0.35%를 각각 추가할 예정이다. 3년물은 금융시장 상품들의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가산금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9월부터 기존의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계좌(미래에셋증권)뿐만 아니라 퇴직연금계좌(DC형, IRP형)에서도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을 매입할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계좌에서 개인투자용 국채를 청약하려는 개인투자자는 아래 3개 은행과 5개 증권사에서 퇴직연금계좌(DC형, IRP형)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도입 초기에는 퇴직연금사업자 중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 준비가 즉시 가능한 금융기관 중심으로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점차 다른 금융기관들로 확대할 예정이다.

\* (은행) 신한, 하나, NH농협 / (증권) 미래에셋, 삼성, 한국투자, KB, NH투자

참고로 DB형 퇴직연금에서는 적립금을 개인이 직접 운용하지 않으므로 국채법 상 개인 명의로 매입하는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가 불가하다.

금번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으로 국민의 노후자산 형성을 위한 안정적 투자상품 선택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할 경우 기존 퇴직연금에 제공되는 **세제 혜택\***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 납입시 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 합산)로 세액공제(13.2% ~ 16.5%) +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시 저율 분리과세(3.3%~5.5%)

9월에 발행하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시 세전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 약 11.3%(연평균 수익률 3.8%), 3년물 복리채 약 11.8%(연평균 수익률 3.9%), 5년물 약 22.8%(연평균 수익률 4.6%), 10년물은 약 59.3%(연평균 수익률 5.9%), 20년물은 약 161.3%(연평균 수익률 8.1%)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고지한다.

청약 기간은 9월 9일(수)부터 9월 15일(화)까지이며,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해당 기간에 전용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 (전용계좌)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계좌)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한편, 개인투자자들은 9월중에 2024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를 중도환매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원금과 매입 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       |              |     |     |                        |
|-------|--------------|-----|-----|------------------------|
| 담당 부서 | 국고실<br>국채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박민주 (044-215-5130)     |
|       |              | 담당자 | 사무관 | 김희운 (gia0412@korea.kr) |

## 1. 발행계획

□ 청약 신청 기간 : 2026.9.9.(수) ~ 9.15.(화), 매 영업일 09:00~16:00

□ 청약 신청방법

- 전용계좌(1인 1계좌에 한정) 또는 퇴직연금계좌(DC, IRP)를 보유한 개인은 청약 신청 기간에 판매대행기관\*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청약 신청

\* (전용계좌)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계좌)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 신청 요건 : 전용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DC, IRP)를 보유한 개인
- 신청 기간 : 5영업일 (신청기간 내 청약 철회 또는 청약액 변경 가능)
- 신청 금액 : 최소 10만원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10만원 단위로 증액)
- 신청 종목 : 전용계좌는 3년·5년·10년·20년물 신청 가능,  
퇴직연금계좌는 10년·20년물 신청 가능
- 연간 매입한도 : 전용계좌는 1인당 연간 최대 2억원,  
퇴직연금계좌는 제한 없음
- 청약증거금 : 전용계좌는 청약액 전액을 청약증거금으로 납부,  
퇴직연금계좌는 청약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계좌에 보유

□ 2026년 9월 개인투자용 국채 종목별 발행한도 및 금리

○ 3년물(이표채)

- 발행 한도 : 20억원
- 적용 금리 : 표면금리 3.780%

○ 3년물(복리채)

- 발행 한도 : 30억원
- 적용 금리 : 표면금리 3.780%

○ 5년물

- 발행 한도 : 500억원
- 적용 금리 : 표면금리 4.085%, 가산금리 0.1%

○ 10년물

- 발행 한도 : 1,100억원
- 적용 금리 : 표면금리 4.415%, 가산금리 0.350%

○ 20년물

- 발행 한도 : 650억원
- 적용 금리 : 표면금리 4.570%, 가산금리 0.350%

※ 「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11조: 청약 접수 마감 후 재경부장관은 청약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종목별 발행한도를 총 월간 발행한도 내에서 조정 가능

□ 청약 배정 방식

- 월간 발행한도 내에서 배정하며, 전용계좌 및 퇴직연금계좌의 각 청약액에 비례하여 종목별 발행한도를 배분
- 배정기준 : 종목별 청약 총액이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 청약액 전액을 배정하고,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모든 청약자에게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 후 잔여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

\* 배정 기준금액은 청약 상황에 따라 10만원 단위로 조정 가능(예: 300만원→290만원)

- 배정처리 : 청약 신청에 대한 배정은 전용계좌의 경우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계좌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담당
- 배정결과 : 전용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은 청약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청약자에게 배정결과를 고지하고, 미배정 청약증거금은 반환

## 2. 중도환매 계획

☐ 중도환매 신청 기간 : 2026.9.10.(목) ~ 9.16.(수), 매영업일 09:00~16:00

☐ 중도환매 신청방법

- 중도환매 신청 기간에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중도환매 신청

\*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 : 미래에셋증권

- 신청 요건 :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 5영업일 (신청 기간 내 철회 또는 신청 금액 변경 가능)
- 신청 금액 : 최소 10만원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10만원 단위로 증액)

※ 중도환매 시 이자는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표면금리에 단리로 계산하여 환매일에 일괄 지급

☐ 2026년 9월 중도환매 한도 및 환매 일정

- 중도환매 한도 : 13,013억원(매입금액 기준)
- 상환일(환매일) : 2026.9.20.(일)

\* 환매일이 일요일이므로 그 직후 영업일인 9.21.(월)에 원리금 지급

☐ 발행, 상환 및 등록 업무 : 국채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담당

**붙임 2****2026년도 월별 청약 및 중도환매 기간**

| 구 분 | 청약 기간 (5일)          | 중도환매 기간 (5일)        |
|-----|---------------------|---------------------|
| 9월  | 9.9(수) ~ 9.15(화)    | 9.10(목) ~ 9.16(수)   |
| 10월 | 10.8(목) ~ 10.15(목)  | 10.8(목) ~ 10.15(목)  |
| 11월 | 11.11(수) ~ 11.17(화) | 11.11(수) ~ 11.17(화) |
| 12월 | 12.9(수) ~ 12.15(화)  | 12.10(목) ~ 12.16(수) |

※  음영은 청약 기간과 중도환매 기간이 다름

\* 신청 기간 : 발행일·환매일(매월 20일)의 7영업일 전부터 3영업일 전까지, 매 영업일 09:00~16:00

\*\* 12월에는 연간 국채 발행한도 등을 고려하여 개인투자용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음